

『민원사무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구비서류 등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 전 심 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과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석유판매업 (주유소) 등록	7일	1.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신청서 1부 2.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 계획서 (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 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1부 3. 주유기의 명세서 1부 4.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1부 5. 시·도지사가 영 별표 2 제1호 다목 기타란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 도면 (2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7일	1.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 (자기소유 또는 독점적 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 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1부	6일	1.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서 1부 2. 주유기의 명세서 1부 3.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 계획서 1부 4. 시·도지사가 영 별표 2 제1호 다목 기타란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면 (2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새마을과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 전 심 사 후 정 식 민 원 제 출 시		처리과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고압가스(제조,저장소 설치,판매)허가신청	5일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함) 3. 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5일	1. 사업계획서 1부	5일	1. 정관 및 등기부등본(정보공동 이용)1부(법인의 경우에 한함) 2. 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새마을과
고압가스(제조,저장소 설치,판매)변경허가신청	4일	1.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2.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 공사가 발행한 것) 1부	4일	1.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4일	1.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 공사가 발행한 것) 1부	새마을과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허가신청	5일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기술검토서 (한국가스안전 공사가 발행한 것) 1부 4.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 (집단공급사업자에 한함) 1부	5일	1. 사업계획서 1부	5일	1.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정보공동이용) 2. 기술검토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가 발행한 것) 1부 3.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 (집단공급사업자에 한함) 1부	새마을과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 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신청	4일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술검토서 (한국가스안전 공사가 발행한 것) 1부	4일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일	1. 기술검토서 (한국가스안전 공사가 발행한 것) 1부	새마을과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 전 심 후 정 식 민 원 제 출 시		처리과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공장설립승인 (변경) 신청	1. 의제처리가 없는 경우 7일 2. 동일행정기관의 권한 사항인 경우 14일 3. 용도변경이 수반 되거나 타행정기관의 권한이 있는 경우 20일	1. 공장신설등(변경) 승인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인허가 명세서1부 및 첨부서류 1부	1. 의제처리가 없는 경우 7일 2. 동일행정기관 권한 사항인 경우 7일 3. 용도변경이 수반 되거나 타행정기관의 권한이 있는 경우 7일	1. 사업계획서 1부	1. 의제처리가 없는경우 7일 2. 동일행정기관의 권한 사항인 경우 14일 3. 용도변경이 수반되거나 타행정기관의 권한이 있는 경우 20일	1. 공장신설등(변경) 승인 신청서 1부. 2.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인허가 명세서 1부 및 첨부서류 1부	새마을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공장신설등 신청	1. 의제처리가 없는 경우 7일 2. 동일행정기관의 권한 사항인 경우 14일 3. 용도변경이 수반 되거나 타행정기관의 권한이 있는 경우 20일	1. 공장신설 등 승인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인허가 명세서 1부 및 첨부서류1부	1. 의제처리가 없는 경우 7일 2. 동일행정기관의 권한 사항인 경우 7일 3. 용도변경이 수반 되거나 타행정기관의 권한이 있는 경우 7일	1. 사업계획서 1부.	1. 의제처리가 없는 경우 7일 2. 동일행정기관의 권한 사항인 경우 14일 3. 용도변경이 수반되거나 타행정 기관의 권한이 있는 경우 20일	1. 공장신설 등 승인 신청서 1부. 2.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허가 명세서 1부 및 첨부서류 1부	새마을과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 전 심 사 후 정 식 민 원 제 출 시		처리과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 신청	1. 의제처리가 없는 경우 7일 2. 동일행정기관의 권한 사항인 경우 14일 3. 용도변경이 수반 되거나 타행정 기관의 권한이 있는 경우 20일	1. 사업계획승인(변경 승인)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변경계획서 및 변경 사유서1부. 4. 변경내용의 산·구대비표 1부. 5. 부동산권리자의 사용 동의서 1부. 6.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명세서 1부 및 첨부 서류 1부	1. 의제처리가 없는 경우 7일 2. 동일행정기관의 권한 사항인 경우 7일 3. 용도변경이 수반 되거나 타행정기관의 권한이 있는 경우 7일	1. 사업계획서 1부.	1. 의제처리가 없는 경우 7일 2. 동일행정기관의 권한 사항인 경우 14일 3. 용도변경이 수반 되거나 타 행정 기관의 권한이 있는 경우 20일	1. 사업계획승인(변경 승인) 신청서 1부. 2. 변경계획서 및 변경 사유서 1부. 3. 변경내용의 산·구대비표 1부.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5.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인·허가명세서 1부 및 첨부서류 1부	새마을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10일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2. 환경조사서 (1일소각용량 50톤 이상인소각시설에 한함)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청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함) 4. 공동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등에 관한규약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5일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 확보계획서	7일	1. 환경조사서 (1일 소각 용량 50톤 이상인 소각 시설에 한함) 2.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청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함) 3. 공동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규약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 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환경관리과

민원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과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농지전용 허가(변경)신청	10일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농지의 소유권 입증서류 (사용승낙서) 4. 지적도등본 및 지형도 5. 피해방지계획서) 6.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에 한함)	8일	1. 사업계획서 2. 농지의 소유권 입증서류 (사용승낙서) 3.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에 한함)	9일	1. 신청서 2. 지적도등본 및 지형도	농업유통과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계획 (변경)승인	60일	1.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 계획 승인신청서 1부 2. 주택건설사업계획서 1부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3. 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배치도1부 4. 주택설계도서 1부 5.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동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1 조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1부	30일	1.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 계획서 2. 기본설계도서	60일	1.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서 1부 2. 주택건설사업계획서 1부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3. 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배치도 1부 4. 주택설계도서 1부 5.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1조 규정 에 의한 관계서류 1부	종합민원 과

민원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과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초지조성허가	35일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지적도 4. 지형도 5. 토지대장	25일	1. 사업계획서 2. 지적도 3. 지형도 4. 토지대장	20일	1. 신청서 2. 토지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산림축산과
개발행위허가	15일	· 허가신청서 · 토지의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배치도, 설계도서 · 개발행위허가 사업계획서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 또는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등조서도 면가예산내역서(토지형질 변경, 토석채석에한함) · 경미한 건설공사 및 옹벽 등 구조물의설치등을 수반 하지않을시 계략설계도서	7일	· 개발행위허가 사업계획서 · 배치도	7일	· 허가신청서 · 토지의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설계도서	건설과

민원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과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산지전용허가신청	30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1부 4. 「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동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5. 「산림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림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입목축적조사서(허가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에 한합니다) 1부 6. 복구대상산지의 중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중·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7. 「산림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산림토목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8. 「농지법」 제51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법」 제20조에 따른 축산업등록증명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원으로서 농지원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15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1부 「농지법」 제51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법」 제20조에 따른 축산업등록증명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원으로서 농지원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30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1부 4. 「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동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5. 「산림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림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입목축적조사서(허가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에 한합니다) 1부 6. 복구대상산지의 중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중·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7. 「산림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산림토목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8. 「농지법」 제51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법」 제20조에 따른 축산업등록증명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원으로서 농지원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산림축산과